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종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35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6. 10.

발의자 : 이종배 · 김정재 · 강대식
안철수 · 김용태 · 박대출
윤영석 · 정태호 · 김승수
성일종 · 서천호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를 두어 신용카드, 직불·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40%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.

그러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2021년 전통시장상점포 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시장당 일평균 고객수는 4,672명으로 2018년 5,164명 대비 약 10%가량 감소하는 등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소득공제 특례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,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공제율을 40%에서 50%로 상향

조정하여 지역소상공인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
키려는 것임(안 제126조의2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28년 1 2월 31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“100분의 40(2023년 4월 1 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의 경우에는 100 분의 50)”을 “100분의 50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